

2025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

□ 추진 배경

-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준법의식 제고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하여 각종 지원금, 장려금*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
- * 고용유지지원금,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(청년추가고용 등), 고용안정장려금,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등

□ 자진신고 기간: 2025.5.1.~5.31.(1개월)

□ 자진신고 혜택: 추가징수 면제, 지급제한기간 1/3 감경

□ 신고방법: 온라인(고용24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 등), 방문, 우편, 팩스, 전화 등

- 방문/우편: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부정수급조사과
- 전화: 042-480-6066~7/ Fax: 042-717-4004

□ 고용보험 부정수급 형사 처벌(고용보험법 제116조)

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(단,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

<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>

구분	부정수급 적발 사업주	자진 신고 사업주
부정수급액	반환	반환
추가징수액	부정수급액의 2~5배	면제
지급 제한	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~1년	최대 1/3 감경
형사 처벌	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	감면, 선처 등 검찰 건의

붙임2

홍보 문구

○ 현수막 문구



○ 전광판 문구

「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」 운영

=> 온라인 접수: www.work24.go.kr(고용24)

=> 유선문의: 042-480-6066/6067

2025. 5. 1.(목)~ 5. 31.(토)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

전광판(유관기관)	홈페이지 팝업 디자인